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3060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동부출장소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1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7.
판 결 선 고	2019.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분 재산세 2,480,210원, 지방교육세 496,050원, 2014년도 분 재산세 2,740,540원, 지방교육세 548,110원, 2015년도 분 재산세 3,736,120원, 지방교육세 747,220원, 2016년도 분 재산세 3,520,900원, 지방교육세 70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농지원부 취득 후 의무농사 기간인 3년 동안 인부를 동원하여 콩을 파종하였고, 그 이후에는 농장에서 소나무, 개나리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심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콩을 파종하였다거나 농작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2010년경에 심은 소나무가 30여 그루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오랜 기간 농작물 경작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소나무가 계속하여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이를 잘 가꾸기 위한 비료 구입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죽은 나무를 가지치기했다는 것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5-31

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대지 일부 면적에 일시적인 조경수가 식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농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